

발간등록번호
72-6530000-000026-10

20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
수
사
례
집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 수 사 례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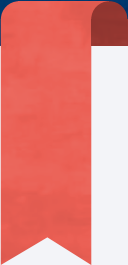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
수
사
례
집

“
소개의 글





‘규제’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특히 **‘행정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을 말하며 허가·면허·신고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이렇듯 도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규제는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 규제혁신 목표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한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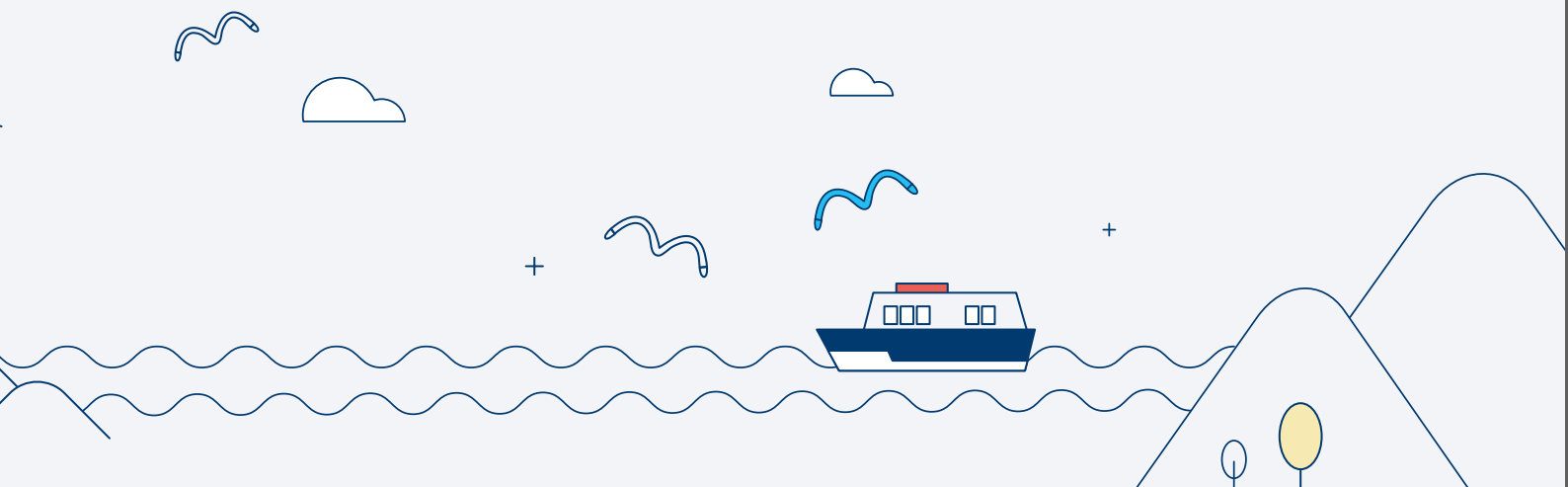
책자에 소개된 우수사례는 중앙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도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구현되는데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규제는 국민 생활에 합리적인 준거가 되는만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환경변화에 따라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12.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 규제혁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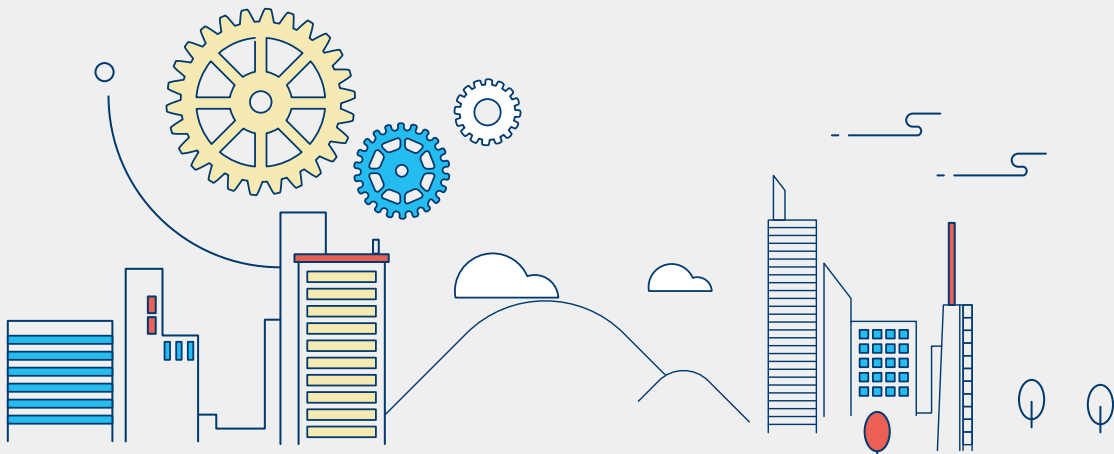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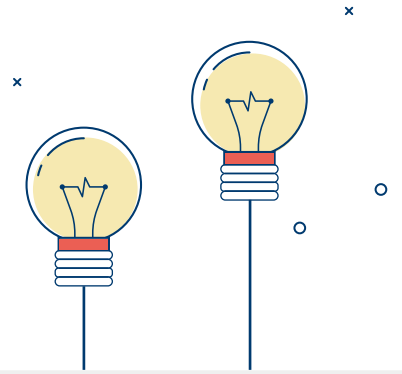
Contents

I

규제개선 우수사례

①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기준 완화	10
② 도로 주변 관광지 안내 범위 확대	12
③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	14
④ 임산물 재배 부대시설의 일시사용신고 대상 명시	18
⑤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완화	21
⑥ 초소형전자자동차 규제 명확화	23
⑦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취업비자 규제 개선	25





II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본청)	30
②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통한 사회통합망 강화(본청)	32
③ 소규모 창업기업 주력업종 지원 확대(본청)	35
④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증수제한 해제(강릉시)	38
⑤ 공공서비스 확인 예약을 “한번에! 한눈에! 한손에!”(강릉시)	40
⑥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 해소(강릉시)	42
⑦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 폐지(강릉시)	44
⑧ “면적”은 늘리고 “조정금”은 줄이고(삼척시)	46
⑨ 지적재 조사지구 내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철원군)	49
⑩ ‘산림내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지’ 공익 숲가꾸기 추진(화천군)	51
⑪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화천군)	53
⑫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 제공(양구군)	55
⑬ 태양광발전 규제해소를 통한 소득기반 마련(양구군)	58

참고

규제혁신 건의창구 누리집	62
---------------	----

규제개선 우수사례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기준 완화

도로 주변 관광지 안내 범위 확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

임산물 재배 부대시설의 일시사용신고 대상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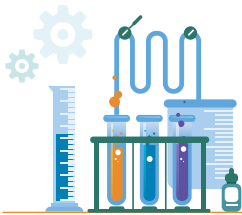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완화

초소형전자자동차 규제 명확화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취업비자 규제 개선

이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기준 완화



도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조인희 주무관

033-520-7359

0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재 국내에서 액화수소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경우, 지침* 및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한 “액화수소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추가안전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 (관련지침) 고압가스용 안전밸브 제조의 시설·기술·검사·재검사 기준(KGS AA319)

** 액화수소 안전밸브 제조에 관한 추가안전기준(안)(한국가스안전공사, '22. 12.)

문제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경우, 액화수소, 액화헬륨 및 액화 네온을 유체로 하는 극저온 성능시험을 쳐야 하나, 국내·외 검사시설이 없어 제품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3년 실증을 거쳐 '24년 말까지 액화수소를 유체로 하는 시험장치 구축을 완료 하겠다고 밝힘('23. 5.)

02 규제 개선과정

- ▶ 규제자유특구 수시·정기점검을 통한 현안사항 보고(수시)
- ▶ 강원도 기업호민관 규제 건의서 제출('23. 1월)
-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강원도 기업호민관 합동 토론회('23. 3월)
- ▶ 안전밸브 공동발주를 위한 제조사 KGS인증 테스트 실패('23. 5월)
- ▶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 전까지 액체질소 시험 요청(사업자 ▶ KGS)
- ▶ 액화수소 플랜트 이력있는 해외제품의 자체안전관리위원회 사용 승인 협의('23. 7월)
- ▶ 액화수소 추가안전기준안 개정('23. 7월)



호민관제도 발굴



산자부 토론회

03 개선내용

단기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 중인 대기업(SK, 효성 등)이 액화수소용 안전밸브를 해외에서 구매 후 국내 중소기업에 판매하도록 지원

* 강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자(패리티)와 협의('23. 3. 22.)하여 액화수소 시험의 불가피함을 설명하였으며, 안전밸브 공급을 위해 대기업과 특구사업자간 연결 성사

중장기

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 중인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25년 완공)에 검사설비를 구축하여 개발, 검사 및 인증 등 지원 예정



액화수소 추가안전기준안 개정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구축

04 기대효과 (예상)

- 국내 테스트시설 구축시 해외제품과 경쟁 할 수 있는 국내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며, 대규모 액화수소 제조시설은 500~2,500개, 중·소규모 제조시설은 30~150개 및 액화수소 충전소는 230~1,150개의 안전밸브 사용이 예상됩니다.
- 규제완화에 따라 대규모 액화수소 제조시설 5개(창원, 울산, 인천(3))과 중·소규모 3개(김해, 삼척, 논산), 액화수소 충전소 23개(SK E&S 16기, 효성 4기, 코하이젠 3기)의 시설구축이 가능합니다.

➔ 안전밸브 사용량 760~3,800개, 사용비용 110~550억의 효과 추정

액화수소 안전밸브 성능시험 기준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추정치)

(단위: 개소, 억 원)

구분	개소	안전밸브 사용량	안전밸브 사용액	비고 (시설당 안전밸브 사용량 및 사용액)
합계	31	760~3,800	110~550	
대규모 제조시설 (30톤/일)	5	500~2,500	100~500	(사용량) 100~500 (사용액) 0.2
중·소규모 제조시설 (10~500kg/일)	3	30~150	3~15	(사용량) 10~50 (사용액) 0.1
액화수소충전소	23	230~1,150	6.9~34.5	(사용량) 10~50 (사용액) 0.03

출처 : 시설 및 밸브제조업체 유선조사(현대로템, SK E&S, 조광NI, 수림테크 등)
 ※ 조사자 : 강원테크노파크 에너지팀장 조형환(2023. 6. 13.)

02

도로 주변 관광지 안내 범위 확대



도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호예원 주무관

033-520-7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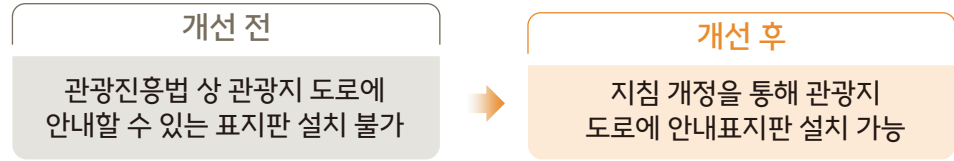
01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많은 지자체의 관광지 개발로 외지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지침(도로법 및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관광지에서는 고속국도 등의 도로에 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지침에 따른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과 관광특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 또한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 4조(적용기준 및 적용범위)에 의해 자동차 전용도로에는 시설 안내표지 설치가 금지되어 고속국도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관광지를 안내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02 규제 개선과정

- 도 규제혁신과에서는 최근 3년('20~'22)간 발굴된 규제혁신 과제를 목록화 하였으며, 미검토된 과제로 추가 건의 시 수용이 가능성 높은 과제로 자체 선정.
- 도 소관부서(관광정책과, 도로과) 및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규제개선 가능성에 대해 협의
-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창구에 제출[규제개혁혁신문고 접수('23. 4. 8.) 및 행정안전부 건의('23. 4. 12.)]
- 국토교통부에서 면밀히 검토 후, 수용 결론을 내리고 법령 개정 추진
- 개정사항 :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23.8.28.,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3-369호)
 -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관광지표지 설치 대상 추가

03 개선내용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18]

현 행			개 정 안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18]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제17조제2항 관련)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별표 18]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 (제17조제2항 관련)		
관광지의 종류	도로별 구분		관광지의 종류	도로별 구분	
	고속 국도 외	고속 국도		고속 국도 외	고속 국도
<신 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	○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1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2종 종합휴양업으로 지정된 관광시설	○	○

04 기대효과

- 도로에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외지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개선될 것이며, 관광지를 이용하는 외부인의 방문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3

지적재조사 조정금 개선



도 소관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
- 이진희 주무관
- 033-249-2354

0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고액 납부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조정금 이의신청의 다수는 하향요구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조정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정금 분할납부 규정인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3조1항에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하여, 조정금의 금액이 큰 경우 납세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적재조사 토지 개별공시지가 연간 변동률*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동리 통합	4.6%	5.4%	5.4%	5.6%	5.9%
동지역	3.5%	3.7%	4.2%	5.1%	5.7%
리지역	5.0%	6.1%	5.9%	5.9%	5.9%

*김기수.(2018).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원 삼척시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연도	지구명	총소유자	조정금 소유자	지급	징수	조정금이의신청			
						상향요구	비율	하향요구	비율
2020년	성내1지구	81	27	17	10	0	0	3	30%
	임원1지구	291	110	42	68	1	2.4%	7	10.3%
	성북1지구	51	10	4	6	0	0	1	16.37%
	동막1지구	293	51	15	36	0	0	5	13.9%

전라북도 남원시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사업지구	소유자	필지수	조정금이의신청			비고
			상향요구	비율	하향요구	
요천·신평지구	204	289	23	1	22	
행정·송기지구	258	439	15	3	12	표준지조정금산정

*지적과 국토정보(제50권제2호) p62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3조(분할납부)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문제점

경기둔화와 지가상승, 사업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조정금 납세가 어려워지고, 고액납세자가 증가하여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체납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어촌·고령의 토지소유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조정금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 체납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세수 확충에 구멍을 내므로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현실 반영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삼척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누적 체납자 수 : 60명(전체 납부자의 14%)

* 삼척시 체납자 증가 추이 : ('14~'16) 11명 ▶ ('17~'19) 21명 ▶ ('20~'23) 28명

가격도 몰랐는데 땅값 안 내면 압류?..군청 “법대로 한 것” - (2023. 7. 13.YTN)
 지적재조사 후 3890만원 조정금 폭탄 - (2018. 4. 4.국제신문)
 “조정금 너무 비싸요” 지적재조사 사업에 일부 주민 반발 - (2022. 10. 7. 연합)



지적재조사 조정금 애로사항 관련 기사

02 규제 개선과정

- 이러한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조정금 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2022. 12. 27.)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

- ①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재산가액 1% 적용
 - ②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 연 6회 ▶ 12회 확대
 - ③ 국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기준 50% 완화
 - *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 : 1천만원 ▶ 5백만 원 초과
 - *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 : 1백만원 ▶ 50만 원 초과
-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 기대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12월 30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제도 비교

구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국유재산 매각대금
발생시기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시 증가된 면적	국유재산 매수 시
분할납부 기준액	1천만 원	5백만 원
분할납부기한	1년 / 4회	3년*
산정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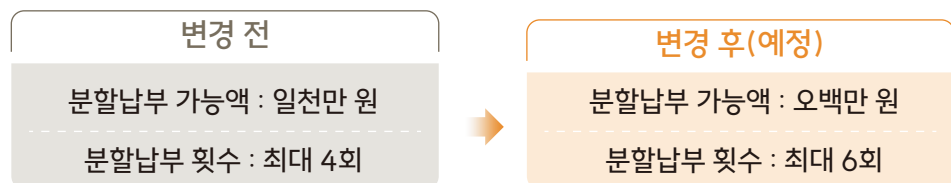
*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의결 :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기간 5년으로 연장

-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면적 증가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향 및 분할납부 가능 횟수 6회로 증가 건의

03 개선내용

-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건의과제를 검토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완화 방안을 수용하였고, 그에 따라 지적재조사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공문을 회신하였으며, 시기는 '23년 하 반기 이후가 될 예정입니다.



04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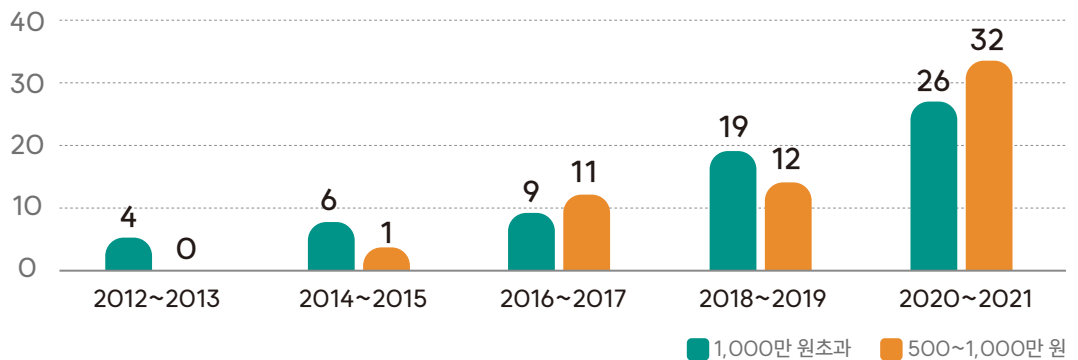
결 과

- 지적재조사사업의 소유자 친화적 개선으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친화적 개편
 - 분할납부 가능액 하향(천만 원 ▶ 오백만 원), 분할납부 가능 횟수 증가(4회 > 6회) 등을 조정금 통계 현행화 작업 완료 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개선효과 · 삼척시 사례

- '20~21년 삼척시 기준, 조정금 분할납부 금액이 완화되면 납부 가능 토지소유자가 26명에서 58명으로 2배이상 증가해지며, 토지 소유자가 체납걱정 없이 현실경계로 조정이 가능해 집니다.
 - 부담 감소로 인해 바르고 가치 높은 토지경계 구축, 주민 간 토지분쟁 해결, 이의신청 감소 및 성실납부에 따른 세수확충 기대

삼척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고액납부자 현황



04

임산물 재배 부대시설 일시사용신고 대상 명시

도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관리과

김형섭 주무관

033-249-3162



0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임산물재배 독려를 위해 법률 개정(법률 14361호, 산림관리법)을 통해 임야 내 임산물 재배 행위 제한 완화하였습니다.

- 산지에서 절·성토를 통한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임산물 재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에서 행위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됨.

문제점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임산물 재배 시 수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였습니다.

- 임야 내 임산물 재배 시 야생동물 피해 및 외부인 출입에 따른 절도와 경작지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울타리나 감시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나 법 개정 당시 임산물재배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문제점 I 법령 미비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지 난

- 법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임산물재배 시 수반되는 '부대시설'이 규정되지 않아 임야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의 '부대시설' 설치가 어려움

문제점 II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미규정에 따른 무단설치 사례 증가

- '부대시설'이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규정되지 않음에 따라 많은 임업인들이 임야 내 '부대 시설' 설치 시 산지전용(혹은 산지일시사용)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설치하여 산지 불법훼손으로 적발당하는 사례가 발생됨

02 규제 개선과정

인허가 요청 증가

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어 임야 내 임산물 재배가 증가하며 부대시설에 대한 인허가 요청이 증가하였고 부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청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개정으로 임산물 재배가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임시 설치 부대시설 적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

지속적 교류

임산물재배 임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부대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개선요청

이에 행정안전부 및 규제개혁신문고로 규제개선과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대시설'의 '산지일시사용' 적용 변화

행위대상	개정 전	개정 후
임산물재배 (50cm미만 형질변경)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36호 → 적용가능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 ✕ 「산지관리법」제2조 제2호 다목
'부대시설' 설치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35호 → 적용가능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35호 → 적용불가능

03 개선내용

- ▶ 부대시설 설치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에 명시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임산물재배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의 '산지일시사용' 대상 명시

-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현행			개정안		
⑥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⑥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대상시설·행위의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대상시설·행위의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나. 임산물재배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감시 시설, 재해방지시설 등 부대시설			산지전용·일시 사용제한지역 이 아닌 산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4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

현행			개정안		
구분	산지일시 사용면적	산지일시 사용기간	구분	산지일시 사용면적	산지일시 사용기간
1. (생략)	(생략)	(생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중략)	7. 임산물재배를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감시 시설, 재해방지시설 등 부대시설	산지일시사용 면적과 관계없음	10년 이내

04
기대효과

국민불편해소

임산물재배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부대시설 설치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적용이 애매해져 임업인들의 부대시설 설치가 어려웠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임업인들의 임산물 재배 시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경영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임야 내 울타리 설치를 통한 임산물재배 활성화



임야 내 울타리 설치를 통한 임산물재배 활성화



임야 내 감시시설 설치를 통한 임산물재배 활성화

05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 완화



도 소관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과
- 김범기 주무관
- 033-249-4233

0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협의 판단 기준은 최소 사업계획 규모에서 누적하여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예시** ① 최초 30만㎡ ▶ ② 변경 36만㎡ (최초 기준 20% 증가로 미협의 대상) ▶
③ 변경 42만㎡ (최초 대비 40% 증가로 재협의 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문제점

동일한 사업유형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라 할지라도, 최소 사업계획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면 평가 재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재협의 판단기준에 따른 불명확성으로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재협의 시 통상의 협의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함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며, 주민 등 의견수렴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약식절차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상의 협의절차를 모두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개발사업 재협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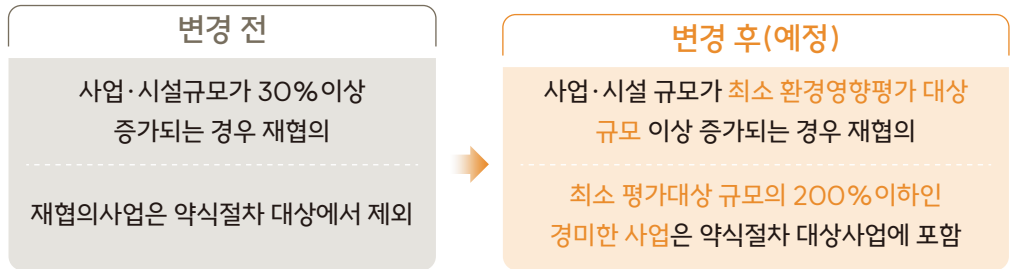
- 15만㎡ 개발사업 ▶ 5만㎡ 증가(30% 이상, 재협의 대상)
- 100만㎡ 개발사업 ▶ 14만㎡ 증가(30% 미만, 재협의 비대상)
- ➔ 소규모 사업의 경우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음

* 평가협의회 > 초안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본안협의

** 대상사업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약식절차(약식평가서)로 진행(「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02 개선내용

- ▶ 재협의 대상·절차 개선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 3. 31.)
 -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중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삭제
 - ➔ **사업·시설의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로 변경**
 - * 단,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 사업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30% 이상의 경우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
 -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포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04 기대효과

-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기준의 법제화를 통한 민원발생 감소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작은 규모의 사업 규모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 ▶ 약식절차 대상 규모 완화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기간 단축 및 이를 통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부담이 감소됩니다.



06

초소형전기자동차 규제 명확화



도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략산업과

우승기 주무관

033-249-3191

0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지난 '18. 6월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전기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초소형전기자동차는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로 규정

- 국내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2020년 기준 누적 6,959대의 규모이며 2018년 이후 6개 이상의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이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초기 시장 단계임
- 신규 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적용 시장 선정과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저렴한 가격, 골목길 이동성, 이륜차 대비 안전성 등으로 민간 배달용으로 확대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배달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중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초소형 전기차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완화가 필요한 상황임

문제점

일반적으로 구동모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최고출력과 정격출력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최고정격출력'으로 표시함에 따라 해석의 차이로 개발 시 혼선이 발생되었습니다.

- 현재 해석되고 있는 법규의 모터 용량은 '최고출력' 15킬로와트 이하로 제작하여야 하는데 이는 초소형 용도 및 시장 요구를 고려하면 너무 낮은 사양이며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근('20. 7.) 상하이기차-GM-우링기차 합작기업이 초소형 전기차 15KW보다 약간 높은 20KW로 출시한 초저가 전기차인 '우링 홍광 미니EV'가 단기에 12.7만 대를 판매하여, 향후 파생 유형의 전기차가 해외 및 국내시장의 경쟁 차량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02 규제 개선과정

- ▶ 도-시군 규제혁신 지역별 순회간담회 건의(2023. 1. 20.)
- ▶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과제 선정(2023. 6. 27.)



도-시군 규제혁신 간담회(강원도 기업호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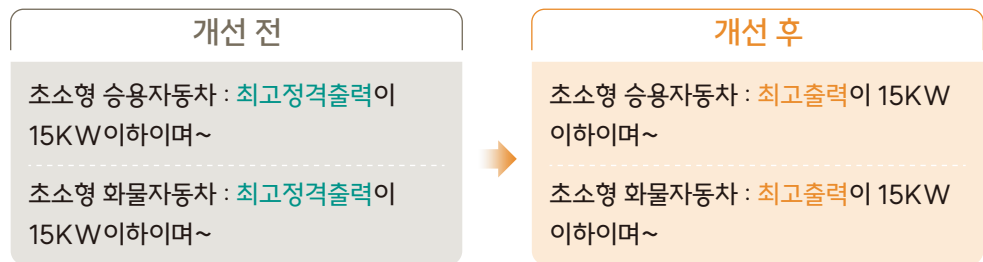


규제혁신 공모 과제선정

03 개선내용

최고정격출력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 ▶ 현행 '최고정격출력'은 전동기의 최고출력을 의미하고
- ▶ 자동차 안전기준에서는 최고출력을 기준으로 원동기의 성능을 평가 중이며, 그에 따라 자동차 제원표에 최고출력으로 표기하고 있음
- ▶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최고정격출력' 용어 수정



04 기대효과

- ▶ 구동모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최고출력과 정격출력의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용어 정비가 수용됨에 따라 용어의 모호함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인한 개발 시 혼선을 제거하였습니다.

07

외국인 유학생·졸업생 취업비자 규제 개선

도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

김태호 주무관

033-249-2497



01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참여자가 졸업 후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E-7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E-7비자로 취직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비자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
E-7-2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종사자(9개 직종)
E-7-3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8개 직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	'17.8.1신설 (3개 직종)
E-7-91	FTA 독립전문가	T6(구약호)

문제점 · 속초시 사례

현재 내·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어려워 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지만 근로자의 체류기간(5개월)이 짧아 일을 가르쳐 능숙해지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 경동대학교 유학생들이 현재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졸업 후 대학의 전공분야로 취업비자 전환은 가능하지만, 수산물 가공 분야 취업비자 전환은 불가능. 기업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으므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02 규제 개선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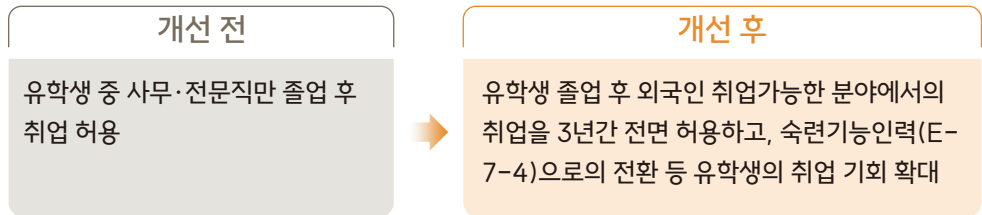
- ▶ 강원도 기업호민관 규제발굴('23. 4. 7.)
- ▶ 중소벤처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제출(5. 31.)
- ▶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 채택
 - ➔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법무부, '23. 8.)



강원도 기업호민관 기업간담회

03 개선내용

- ▶ 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이 전면허용 되었습니다.(법무부)



- ▶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
 - *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강원 12개 시군)에 거주하기로 하는 경우 지자체 추천을 거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계절근로자, 지역특화비자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04 기대효과

- ▶ 산업계 취업통로 확대를 통해 유학생 취업활성화* 및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 * 작년 유학생 졸업자 취업률은 약 16%로 저조
- ▶ 인구감소지역에 지자체 추천을 통한 지역발급비자 발급을 통해 인력공급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GANG
WON
STATE

적극행정 우수사례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통한 사회통합망 강화
- 소규모 창업기업 주력업종 지원 확대
-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층수제한 해제
- 공공서비스 확인 예약을 “한번에! 한눈에! 한손에!”
-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 해소
-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 폐지
- “면적”은 늘리고 “조정금”은 줄이고
- 지적재 조사지구 내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 “산림내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지” 공익 숲가꾸기 추진
-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
-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 제공
- 태양광발전 규제해소를 통한 소득기반 마련

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급방식 개선



도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김서영 주무관
 033-249-2706

01 현황 및 문제점

-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은 매년 동일 여성농업인이 지원 대상자로 다수 선정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바우처 전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대상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해 농번기 이후 바빠진 농업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 방문하지 못해 카드 수령을 잊거나, 뒤늦게 발급받아 사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 ▶ 또한 은행에서는 매년 3만 개가 넘는 바우처 전용 카드를 제작하며 카드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낭비가 가중되었으며, 플라스틱 카드 제작으로 인해 '탄소중립실현' 및 '농업환경보전' 실천에 역행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02 규제 개선과정

- ▶ 복지바우처 제도개선 회의 개최('23.1.) : 지급 방식 변경 합의(선불충전식 > 포인트지급)
- ▶ 사회보장제도 긴급 변경 협의요청(도 ▶ 보건복지부, '23. 3. 7.)
 - 실물바우처 ▶ 대상자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 ▶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변경 및 안내 : '23. 3. 17.
-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협약 체결(도-시군-NH농협은행강원본부, '23. 3. 31.)
 - 협력사항, 지급방법과 사용, 협약기간 등 협약 체결
- ▶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보(보건복지부 ▶ 도): '23. 4. 25.



도-시군-NH농협은행강원
업무협약체결



사회보장제도
협의통보

03 개선내용

- ▶ 선불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농가소유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청절차	신청·선정 ▶ 은행방문수령 ▶ 사용	신청·선정 ▶ 사용
지급방식	선불식 복지바우처 전용카드 매년 발급	대상자가 이미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사용편의	-	사용 금액 및 잔액 알림 서비스 제공 가맹점 안내 등 편의 제공

04 기대효과 (예상)

- ▶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복지바우처 포인트 전환으로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방문이 불요해져 발급·사용 시기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여성농업인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으며 포인트 우선 차감 방식으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 또한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를 만료기간까지 지속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카드 제작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사용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배출량을 감소시켰습니다.
- ▶ 또한 위 사례는 행안부 주관 정부규제 우수사례 선정('23. 8.)되어 타시도 복지바우처 지급에 모범사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현황 비교

구분	변경(전) *'22. 5.기준	변경(후) *'23. 5.기준	증감(율)
확정인원	26,354명	29,868명	13.3%
발급금액	4,574,200,000원	5,768,800,000원	26.1%
사용액	1,452,664,067원	2,068,159,850원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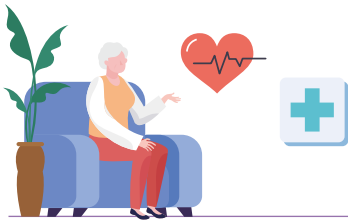
※2023년 말 기준, 잔액 확인 및 설문 등을 통해 제도 개편의 효과 지속 환류

참고자료(언론보도)



02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을 통한 사회통합망 강화



도 소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신보미 팀장

033-249-2798

01 현황 및 문제점

- ▶ 어르신들이 사시는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돌봄 강화의 필요성 증가하고 있으며
- ▶ 최근 병원 내 키오스크 이용 활성화로 인하여 진료, 수납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진료와 검사실 간 이동동선이 복잡하여 보호자 동반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 보호자의 타 지역 거주와 사회생활 등에 따라 병원에 동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어르신의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병원 방문 시 주요 불편 사례

- 한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함 ▶ 매번 자식에게 말하기 미안함
-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함 ▶ 찾아갈 수가 없음
- 병원에서 접수·수납할 때 ▶ 키오스크 할 줄 모름
- 나도 아프고, 부모님 병원도 모시고 가야함 ▶ 직장에 눈치 보임
- 보호자 필요 검사(내시경 등) 해야 함 ▶ 병원에서 반드시 보호자 동반하라고 함
- 부모님 병원 방문이 너무 잦아 ▶ 형제들 많아도 소용없고 의만 상해

02 규제 개선과정

-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2. 9. 1.
-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지침 개발 : '22. 12.
 - 서비스 절차, 운영체계, 인력채용, 동행매니저 파견 및 복무관리 등
- ▶ 시범사업 시·군(춘천시·동해시·횡성군) 확정 및 간담회 개최 : '22. 12. 22.
-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시범사업 시·군 순차별 시행 : '23. 2. ~ 5.
 - ↳ '23. 2.(춘천시) > '23. 4.(동해시) > '23. 5.(횡성군)

- ▶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3. 3. 8.
-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종사자 온라인 교육 강의 개설 : '23. 4. 10.
↳ 4개 과정 2시간씩 총 8시간 교육 영상 촬영, 공무원교육원 사이트 송출
- ▶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홍보 계획 수립 : '23. 5. 22.
- ▶ 시범사업 시군 사례 분석 및 홍보 독려를 위한 간담회 추진 : '23. 8. 3.
- ▶ 도 전역 확대를 위한 지침 재설계 및 시군 설명회 추진 : '23. 8. 11.
- ▶ 2024년 도 14개 시군 확대 추진 예정

추진상 어려움 및 해결노력(극복과정)

- **이용료(서비스 단가)는 얼마가 적정할까?**
 - ▶ 차량제공을 원하는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병원동행서비스는 유료서비스로서 이용료를 받고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교통법에 위배되어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동거리와 시간이 길어서 그만큼 이용료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료 및 인건비 결정
 - 이용료: 기본 1시간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 / 교통비 자부담
 - 동행매니저 인건비: 강원도 생활임금 + 원거리 교통비
- **시군별 수행기관을 둘 경우 홍보를 위해서 핫라인(1588-0000) 사용 불가**
 - ▶ 핫라인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홍보를 위해서 뒷자리만이라도 일치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몇 날 며칠 18개 시군의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 0508(어버이날)을 확정 짓고 통일시킴.
 - 춘천시 033-241-0508, 동해시 033-522-0508, 횡성 070-4811-0508
- **전달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나?**
 - ▶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전일제 사회복지사 1명과 시간제 동행매니저를 채용 후,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면 동행매니저를 전일제로 채용키로 함

03 개선내용

추진방향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 ▶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도 없고, 교통편도 불편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종·중복지원을 막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추진내용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신규 추진”

- ▶ 강원특별자치도는 혼자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주요내용

- **이용료** : 기본 1시간 5,000원 + 추가 30분당 1,5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0원 + 500원 / 교통비(버스, 택시비 등)는 자부담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 **주요업무** : 집↔병원 간 이동, 접수·수납, 각종 검사실 및 시술실 등 이동 안내, 예약, 처방전 및 약품 수령, 투약지도, 진료 정보 보호자 전달 등

04
기대효과

- ▶ 사회보장협의로 2024년부터 사업 시작이 가능했으나, 2023년 3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좀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년 10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 607명, 누적 서비스건 수 1,519건 달성
 - 2024년 14개 시군 확대 추진

개선관련 주요사례

- “타지 거주 자녀의 감사”, “자녀에게 부담없이 병원 이용”

아버지가 넘어지며 이마를 크게 다쳐 급히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으나, 긴급 서비스 신청을 통해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진료결과를 전달 받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역시 자식에게 부담없이 편히 병원을 갈 수 있어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 ▶ 도 사업을 통해,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자녀가 아버지의 병원 진료를 맡길 수 있어 깊은 감사를 표함
- “주기적 투석, 독거노인은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식에게 미안해”

주기적으로 투석을 해야하나,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독거노인은 뉴스를 보고 서비스를 직접 신청한 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에 만족하였습니다.

 - ▶ 더 이상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고민으로 우울한 생각이 들지 않아 고맙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에 만족해함
- “한번 이용하면 평생 VIP 확정!”

시골에 장애인 자녀와 살고 계신 할머니는 허리가 안 좋아서 읍내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매일 가서야 했는데 혼자 병원에 가는 길은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병원을 가게 되어 너무 만족하였습니다.

 - ▶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거야”라고 하시며, 오늘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심

참고자료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홍보



미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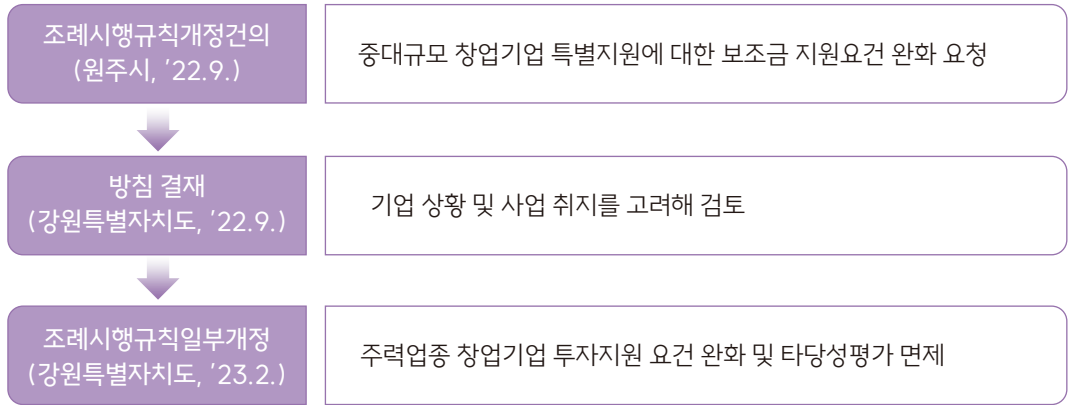


행	상	지	영	향	기	회	복	기	회	복	기
연간 판매	회차당										
고	목	감	지	2023.09.19							
서비스 상세 내용											
대상자	- 저소득의 취약계층 중 병원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으로 복·편안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령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목적	- 병원 방문 시 안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과 함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령층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또한, 고령층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또한, 고령층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특성사항	-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또한, 고령층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또한, 고령층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함.										

03

규제 개선과정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관련)



04

개선내용

“소규모 주력업종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특별 지원 신설*	중·대규모 이상인 기업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	① 중·대규모 이상인 기업 ②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신설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억 원 이상인 기업
투자 요건 완화	보조금 지원 시 타당성 평가 필요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 시 타당성 평가 제외

*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주력업종 특별지원) 신설

주력업종 창업기업 특별지원 기준


-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선정한 시군별 주력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주력업종)
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의 국가첨단전략기술,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의 첨단업종(85),
③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15)
- 법인설립등록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 원)		
		계	도비	시군비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 ×20%	1	0.5	0.5
상시고용인원 7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업		2	1	1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		4	2	2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6	3	3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40억 원 이상인 기업		8	4	4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10	5	5

05
개선효과

-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지원기준을 신설하여 중대규모 투자에 국한되어 있던 창업기업의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추어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산업 내 우량기업 유치 및 도내 창업 활성화 기대
 -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육성 기여

관아로
강원도, 인센티브로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업종 기업 유치
신호재 기자
입력 2023-04-20 17:14:40



[429-2895]

강원도는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산업 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각 사군별 주력업종을 선정·고시했다.

'주력업종'은 도가 개별 사군의 산업분류, 기업육성 정책 등 경제 상황 진반을 고려해 선정하는 일종의 특별업종이다.

지난 2월 도는 주력업종의 범위·지원절차·지원내용 등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해 주력업종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보조금 지원 시 기존 비율에서 5%p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주력업종 선정은 강원도와 사군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사군 별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4개 시군 선정)'이 가장 많고 '전기장비 제조업(13개 시군)',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11개 시군)'순이다.

도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지원기준을 신설해 중대규모 투자에만 국한된 창업기업의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춰 혁신적이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생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도 읍면데 산업국장은 "도내 주력업종 선정을 통한 파격적 인센티브가 반도체 등 첨단업종 기업 유치를 돕는 도움을 줄 것"이라며 "보다 개선된 도 내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도인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이 등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호재 AI-Next Generation MTN 기자

보도자료



04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층수제한 해제



도 소관부서

강릉시 도시과

조준현 주무관

033-640-5764

01 현황 및 문제점

- 강릉시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과도한 층수 제한(25층)으로 용적률*이 낮아, 민간에서의 투자유치가 저해되는 각종 인허가 애로가 발생하고 도시의 중심부의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02 규제 개선과정

- 해당 부서 및 전문가 의견 조회 : '22. 6.
 - 상위법 저촉사항을 검토하여 규제 완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고,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행위로 시민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를 하였습니다.
-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2. 7.
- 층수제한 해제, 용적률 완화 : '22. 10.

03 기대효과

- 도심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용적률, 층수제한을 완화하였고, 투자유치 확대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내 용	현 행	개 정
용적률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1,2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1,1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0퍼센트 이하	제5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중심상업지역: 1,500퍼센트 이하 ○ 일반상업지역: 1,300퍼센트 이하 ○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내 용	현 행	개 정
층수제한 완화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5층 이하(2개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25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단, 최고층은 30층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삭제)

- 이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언론보도)

강릉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해제

김우열 | 입력 2022. 10. 14. 05:00

0

옥천·강남·포남·주문진 등 해당
 용적률 따라 25층 이상 건축가능
 시 "불법 증축 해결·민자 확대"

강릉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묶은 '층수제한'이 해제됐다. 용도지역의 용적률도 상향 조정됐다.

강릉시는 이같은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옥천동, 강남동, 포남동, 주문진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제한과 용도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가운데 유일하게 층수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번 층수제한 해제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에 따라 25층 이상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이하에서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이하에서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이하에서 900%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추가 △특화관광지구 내 용도제한 예외조항(주거·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시 도로 12m 확보) 삭제 △건폐율의 완화 법령 개정사항(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건폐율 20%→30%) 반영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감염병관리시설 건축시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시행으로 낮은 용적률로 인한 불법 증축 문제 해결과 함께 민간투자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각종 인허가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와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05

공공서비스 확인과 예약을 “한번에! 한눈에! 한손에!”



도 소관부서

- 강릉시 정보통신과
- 강지은 주무관
- 033-640-5333

01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시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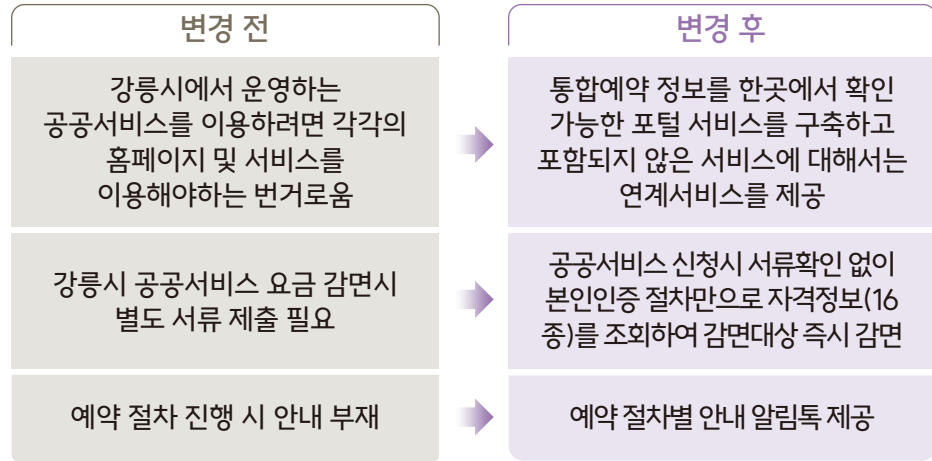
02 규제 개선과정

- ▶ 통합예약시스템 온라인 예약서비스 수요 조사 및 협의 : '22. 5.
 - 강릉시 평생학습관, 강릉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등 통합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현 운영현황과 개선 요구사항 등 자료 취합 완하여 예약서비스를 추진할 기초자료 수요조사를 하였습니다.
- ▶ 통합예약시스템 공연예매솔루션 고도화 : '22. 10.
 - 현재 사용중인 웹서비스 지원 불가에 따른 업그레이드 및 기존 데이터 이관
- ▶ 강릉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23. 1.
 - ※ 사이트명 : 강릉시 통합예약시스템 (<https://www.gn.go.kr/yeyak/index.do>)

03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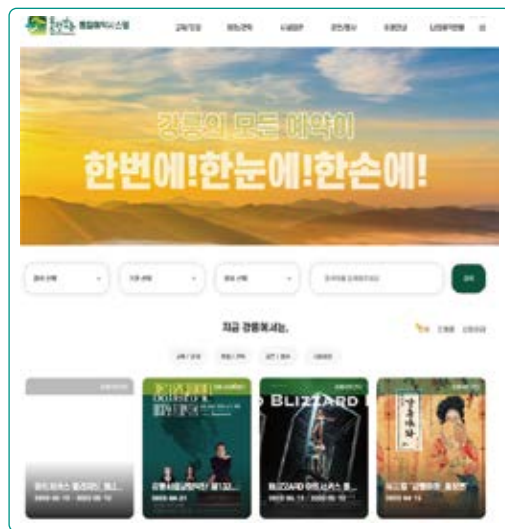
- ▶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으며, 예약 절차별 안내 알림톡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였습니다.
- ▶ 공공서비스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자격정보(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16종)를 조회하여 본인의 감면 여부 확인 후 즉시 감면이 적용되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 이를 통해 가독성, 접근성 등이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및 콘텐츠가 개선되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육/강좌, 체험/견학, 공연/행사, 시설대관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 또한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시 별도 서류 제출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참고자료

홈페이지



언론보도



06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 해소



도 소관부서

- 강릉시 교통과
- 최근용 주무관
- ☎ 033-640-5386

01 현황 및 문제점

- 크게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 자전거로 나뉘는 개인형 이동형 장치는 현재 강릉시에서 4개 업체에 의해 총 1,900여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업체가 관리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도로 및 인도에 방치되는 사례 또한 증가하여 차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이 잇따르지만 단속 근거가 없어 행정집행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02 규제 개선과정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필요성 공론화 : 2023. 1. ~ 3.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 2023. 4.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 검토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신규 설치 논의
 - 민원신고시스템 구축 논의
 - 민원 사항, 애로 및 건의사항 협의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강릉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간담회 사진

03 개선내용

- ▶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 '23. 4.
 -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 '23. 4.

강릉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① 시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에 대한 처분) ① 시장은 도로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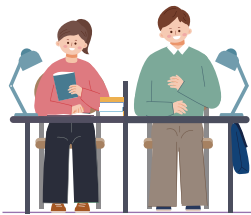
- 대여업체는 수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회수토록 하고, 이동 요청 시 90분 이내 미처리 시 견인처리 후 견인료 부과
- ▶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시에 해소하여 안전한 도로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참고자료 (언론보도)



07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 규제 폐지



도 소관부서

강릉시 특별자치과
김나현 주무관
033-640-5835

0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전국 9개 광역단체*에서는 도조례를 통해 '독서실 남녀좌석을 구분하여' 운영 중입니다.
 - * 부산,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강원, 제주
 - ** 각 지자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문제점

- 9개 광역단체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남·여별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1970년대 대법원이 남녀 좌석 구분 규정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의 자유, 교육, 남녀에 대한 사회통념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유사한 성질의 '스터디 카페'는 위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독서실 사업은 시장경쟁에서 불공정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 * 전국 독서실 현황('22년): 약 4천 여개

02 규제 개선과정

- 2023년 강릉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해당 사례 최우수 수상)
-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 운영)를 통한 규제 애로 건의('23. 4월)
 - ※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남여별 좌석 구분' 조문 삭제
- '남여별 좌석 구분' 조문 삭제 건의 수용(교육부·강원도교육청)('23. 5월)
- 8개 광역단체(부산,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해당 조례 개정 권고 수용('23. 6월)
- 규제개혁신문고(국무조정실 운영) 대표 우수사례 선정('23. 7월)
- 전국 9개 광역단체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 폐지 예정('24. 1월)



언론 기사



규제개혁신문고 대표 사례 선정

03 개선내용

개선 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녀별 좌석 구분 규정



개선 후

- 남녀별 좌석 구분 문구 삭제 예정
- 남녀 혼석 관련 벌점 삭제 예정

04 기대효과

- ▶ 독서실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여 유사 업종인 '스터디 카페'와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 ▶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08

“면적”은 늘리고 “조정금”은 줄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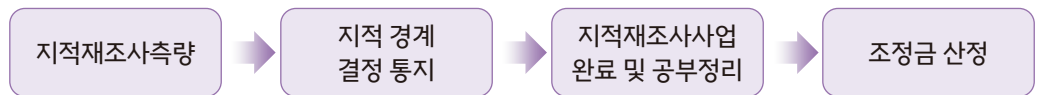


도 소관부서

☎ 삼척시 민원과
 👤 이진옥 주무관
 ☎ 033-570-3873

01
 현황 및
 문제점

- 지적재조사사업은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정형화, 건축물저촉 등을 해소하여 사업추진 공감도와 만족도를 향상하였으며 재산권보호 효과 등이 지표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이전 / 2021년 (건물저촉해소율) 71.1% > 90.2%, (맹지해소율) 65.7% > 90.7%

- 하지만, 사업완료 이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고 등기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이의 신청을 보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 2021년 삼척시 지적재조사사업 4개지구 조정금 이의신청비율 평균17.7%(최소10.3%)
 - 조정금 산정 시 조정되는 필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토지가 증가하는 소유자의 예상보다 조정금이 과다한 경우가 발생하며
 - 조정되는 토지의 가격을 모르는 단계에서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용현황에 따라 지적공부를 작성하기보다, 면적에 맞추어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방향과 어긋나게 운영되는 경우가 발생함

시도	사업지구수	필지수	면적증감필지수	면적증감미변동	
				필지수	비율
전국	254	73,660	36,745	36,915	50%
서울	1	298	46	252	85%
인천	7	1,807	550	1,257	70%
경기	42	8,900	2,493	6,407	72%

- 또한 체납 발생시 본 토지를 압류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과도하게 발생함

- 이의신청을 분석한 결과 면적 감소로 조정금을 지급받는 소유자보다 면적 증가로 조정금을 납부하는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대부분 차지하였으며,

	지구명	총소유자	조정금 소유자	지급	징수	면적증감 미변동			
						상향요구	비율	하향요구	비율
2020년	성내1지구	81	27	17	10	0	30%	3	30%
2020년	임원1지구	291	110	42	68	1	10.3%	7	10.3%
2020년	성북1지구	51	10	4	6	0	16.7%	1	16.7%
2020년	동막1지구	293	51	15	36	0	13.9%	5	13.9%

- 사전에 추정금액을 통지한* 타지자체에서도 하향요구 이의신청이 다수를 차지함

* 가격을 모르는 상황에서 경계를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지구	소유자	필지수	조정금이의신청			비고
			소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요오·오오지구	204	289	22	1	22	타지자체사례
행오·오오지구	258	439	12	3	12	표준지조정금산정

- 하향요구 이의신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를 고민한 결과, 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면적은 증가했지만 실제 사용하던 현황으로 경계가 결정되면서 토지소유자는 늘어난 면적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토지의 면적변동은 인접토지를 사용하거나 국·공유지를 대부, 점유 등의 이용에 따른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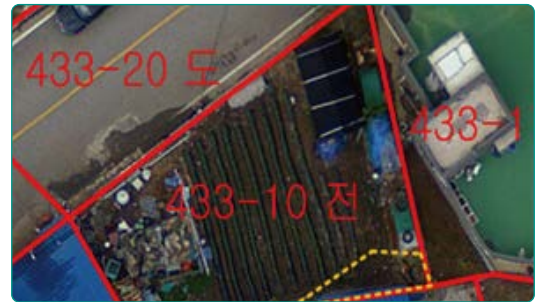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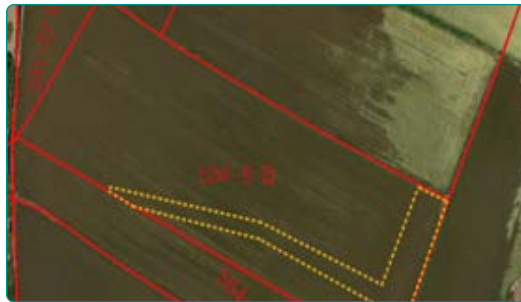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가된 면적만큼 별도의 필지로 분할하여 조정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점유하고 있던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음.



03 개선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되는 부분의 필지를 분리하여 토지의 정확한 감정평가로 조정금액과 소유자의 예상한 금액과의 가격 차이를 좁혔습니다.
 - 본인 토지가 아닌, 증가 부분을 감정평가해 가격 현실화로 이의신청 감소

구분	종전방법	개선방법	구분	종전방법	개선방법
면적	153.4m ²		면적	153.4m ²	
감정평가	32,500원	30,000원	감정평가	329,000원	281,000원
납부금액	4,985,500원	4,602,000	납부금액	6,744,500원	5,760,500원



-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정금 제시는 토지소유자의 현실경계 결정에 도움이 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불하받는 토지와 가격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또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 토지가 아닌 원인이 발생한 증가토지에 압류를 하여 현행의 본인 토지 압류 등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 면적이 증가하는 토지를 본인 소유 토지로 분할등록 하므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 간편한 절차로 토지합병하여 현실경계로 공부 등록 용이



참고자료(언론보도)



09

지적재조사지구 내 건축행정 절차 간소화



도 소관부서

- 철원군 민원허가실
- 박근형 주무관
- 033-450-4735

01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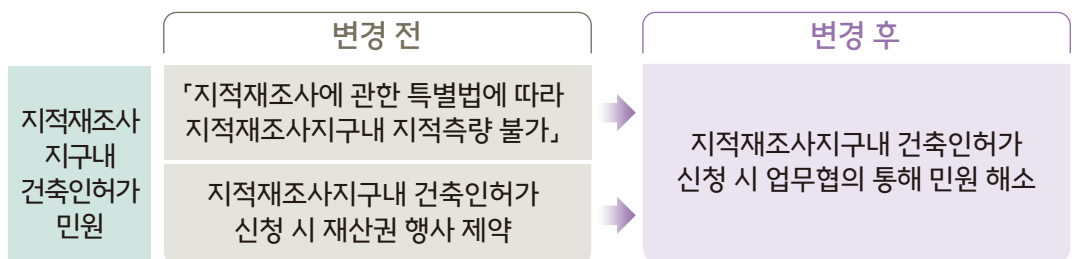
-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경계복원측량이 제한되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에 상당한 시간 소요되어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상당하였습니다.

02 규제 개선과정

- 이러한 제약의 해소방안을 찾기위해 청주시 흥덕구 민원지적과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여부 등을 지적부서와 협업하여, 지적재조사지구내 건축행정(사용승인) 추진계획을 수립('23. 4. 18.)하였습니다.
 -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의 기준으로 건축물이 배치되도록 건축사 건축계획 설계시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하였으며
 - 토지분할·합병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후 합병하도록 조건부 사용승인을 하거나, ②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검토 후 가분할* 상태의 조건부 사용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지적재조사 경계상대에 맞게 건축

03 개선내용

- 지적부서와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측량 지역에서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개선효과

- 지적공부 정리 전 건축물사용승인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건축물대장 생성 등 공적공부 실현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언론보도)

매일일보 창간 17주년 since 2006

maei! 매일일보 PREMIUM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육
전국
기획
피플
MI카드뉴스
MI특별기획

HOME > 전국 > 강원·제주

철원군, 지적재조사 지구내 적극적 건축인·허가 행정 추진

윤여경 기자 | 승인 2023.06.14 13:31 | 댓글 0

매일일보 = 윤여경 기자 | 강원 철원군이 지적재조사 지구내 적극적 건축인·허가 행정을 추진한다.

철원군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시 지적측량을 할 수 없어 지적공부의 정리가 중지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계획시 경계설정 문제로 인근 토지주와 분쟁이 발생하는 등 토지의 현실 경계와 지적경계의 오차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축허가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로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거나 또는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시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기도 했다.

따라서 철원군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 건축계획시 재조사측량이 완료된 임시경계점표지를 현장에 설치하고 인접 토지주와 경계조정에 따른 경계설정합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필지를 합치거나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인신청시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시까지 가합병 또는 가분할 상태에서 조건부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건축행정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옥선 철원군 민원허가실장은 "본 사업을 통해 건축인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민원인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인허가와 관계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하고 재산권과 관계된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업무를 능동적인 자세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산림내 집중호우 · 강풍피해지’ 공익 숲가꾸기 추진

도 소관부서

- 화천군 산림복지과
- 이호찬 주무관
- 033-440-2363



01 현황 및 문제점

- 화천군은 '23년 7월 9일 강우강풍의 발생으로 임야 잣나무가 집단으로 쓰러지고(0.35ha), 전선 농지 등에 산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시 이는 벌채신고 대상으로 산주가 시행*하여야 하나, 피해를 입은 임목의 벌채 및 처리에 큰 비용이 발생하여 산주가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산림자원법」 제36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3

02 규제 개선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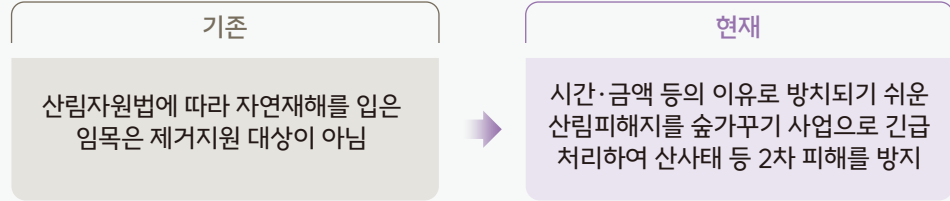
- 산림복지과에서는 '23년 7월 12일 현장을 확인하여 산발적 피해지에는 산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숲가꾸기 패트롤*을 통해, 규모가 큰 0.35ha 면적의 집단피해지는 임목벌채신고를 개인이 신청 후 피해목을 벌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숲가꾸기 패트롤이란 산림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임업기술 교육을 수료하고, 기계톱 등 장비 활용이 능숙한 기술인 5명이 한 팀을 이룸
- 피해목 벌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산주에게 벌채신고 권고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도 및 마을과 근접하여 경관저해에 우려가 있으며, 잣나무가 뿌리가 낮은 특성의 수종인데다, 피해 발생 지역이 토심이 얇고 주변 산지경사가 평균 30도 이상이기에 방치하게 되었을 경우 산사태 등 2차피해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관내 산림기술업체와 산림조합 숲가꾸기·사방 기술자 합동으로 현장확인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산주동의하에 2차 산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0.35ha의 피해목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산림 전면적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사업을 시행하며 산주 입회하에 현장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피해지 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올바른 숲가꾸기 작업 방법을 결정 및 추진하였습니다.

03 개선내용

“지침의 유연한 해석, 일거양득 효과(민원해소, 경관개선)”

- ▶ 산림법과 숲가꾸기 사업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자연재해를 입은 산림의 복구 시 재난지원 근거가 미흡한 산림피해지를 처리

지침 적용방안



- ▶ 산림 2차 피해 우려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적극 행정을 위하여, 산주참여하에 숲가꾸기 현장토론회 개최 및 생활권 주변 산림 위험목·피해목 제거

📍 긴급 숲가꾸기를 통한 피해산림 정비내역

- 화천읍 신읍리산205 16,000㎡ [군유림]
- 상서면 노동리 산47-1 57,300㎡ [사유림]

04 기대효과

- ▶ 유연하고 적극적인 산림행정으로 생활권에 위협이 되는 산림 내 피해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산사태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특히 산주 참여하에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숲가꾸기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하여 산림행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현장점검



현장토론회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



도 소관부서

- 화천군 산림복지과
- 김휘진 주무관
- 033-440-2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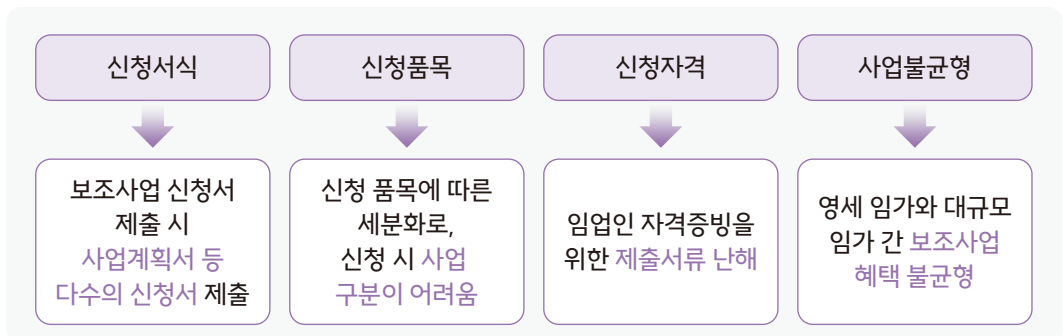
01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 산림소득 보조사업 추진 시 관행적인 사업진행으로 고령화된 관내 임업인들의 사업신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서 서식은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과 농업부서 보조사업 신청서식을 준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서식으로 인해 잦은 민원 발생
 - 신청서 작성 후 누락 및 오기가 많아 잦은 보완사항 발생으로 처리 지연 발생
 - 보조사업 신청 서식에 따라 8가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령화된 관내 임가가 많아 사업내용 구분이 어려워 사업신청 불편

문제점

- ▶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 자격 증빙을 산림청 국비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서류 제출에 불편함이 발생하였습니다.
 - 임업인 증빙을 위한 첨부서류가 방대하여 서류제출 지연
 - 임야 외 지목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관내 임가 및 임업인이 자격을 서류로 증빙하기 어려워 보조사업 신청 시 많은 민원 발생



▶ 관행적 사업진행으로 고령화된 관내 임업인들 사업 신청 어려움 및 불균형 발생

03 규제 개선과정

- ▶ '21년부터 '22년까지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내 임가 및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년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 ▶ '22년 하반기에 일부 반영하여 개선 내용을 점검한 뒤 '23년 추진 시 전면적으로 개선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의견수렴 후 개선내용

- 신청서 내 불필요한 관행적 내용 삭제로 서식 간소화
- 예산 성격에 따른 보조사업 분류로 사업 일원화
- 산림청 질의응답 내용 연찬을 바탕으로 임업인 자격증빙 서류 통일
- 소액사업자 우선지원 내용 신설

04 개선내용

- ▶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간소화를 통해 관내 임가들이 보다 쉽게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 형식적 사업계획서 삭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임야 농업 시 적용
- ▶ 세부사업 일원화를 통한 사업추진 효율화 및 예산 집행률이 상승하였습니다.
- ▶ 소액사업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영세 임가와 대규모 임가 간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였습니다.
 - * 예산 30% 범위

05 개선효과

- ▶ 보조사업 신청 개선으로 신속하게 보조사업을 처리, 집행률을 향상 시켰으며, 소규모 임가들에게 우선 지원을 함으로 보조사업 혜택 효과를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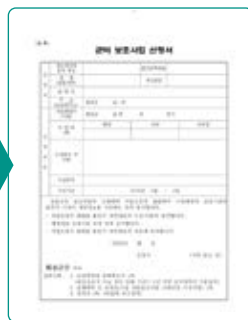
참고자료

보조금 신청서 양식

기존 4장 23개 항목 ▶ 개선 1장 11개 항목



[기존 신청서식]



[개선 신청서식]

보조지원 사업 목록

기존 8개 사업 ▶ 개선 2개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율
1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2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3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4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5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6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7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8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2022년 보조사업 구분표]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율
1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2	산림소득보조사업	1,000,000,000	100%

[2023년 보조사업 구분표]

12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 제공



도 소관부서

양구군 민원서비스과

노나라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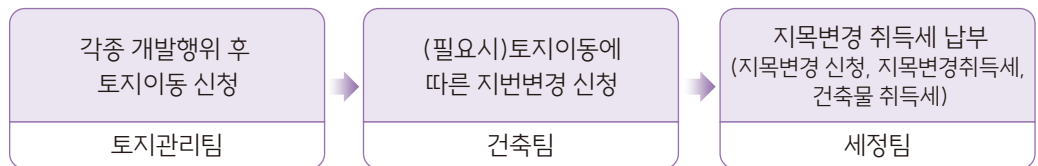
033-480-2330

01 현황 및 문제점

- ▶ 개발행위(건축, 태양광, 창고 설치 등)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시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대위신청** 등의 사유로 인해 공문만으로 민원처리 결과가 이해되지 않아 처리 내용을 재확인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 토지이동 후 지번변경을 안할 경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바로 잡기 어려움에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지목변경·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시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하나 인지하지 못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취득세 납부 민원을 같이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군청을 수 차례 다시 방문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황을 보며 양구군 민원서비스과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 토지이동 신청 처리 신청이 접수 결과 분석(최근 3년) : 연 평균 약 200~300건

* (참고)개발행위 후 민원인이 신고, 납부 등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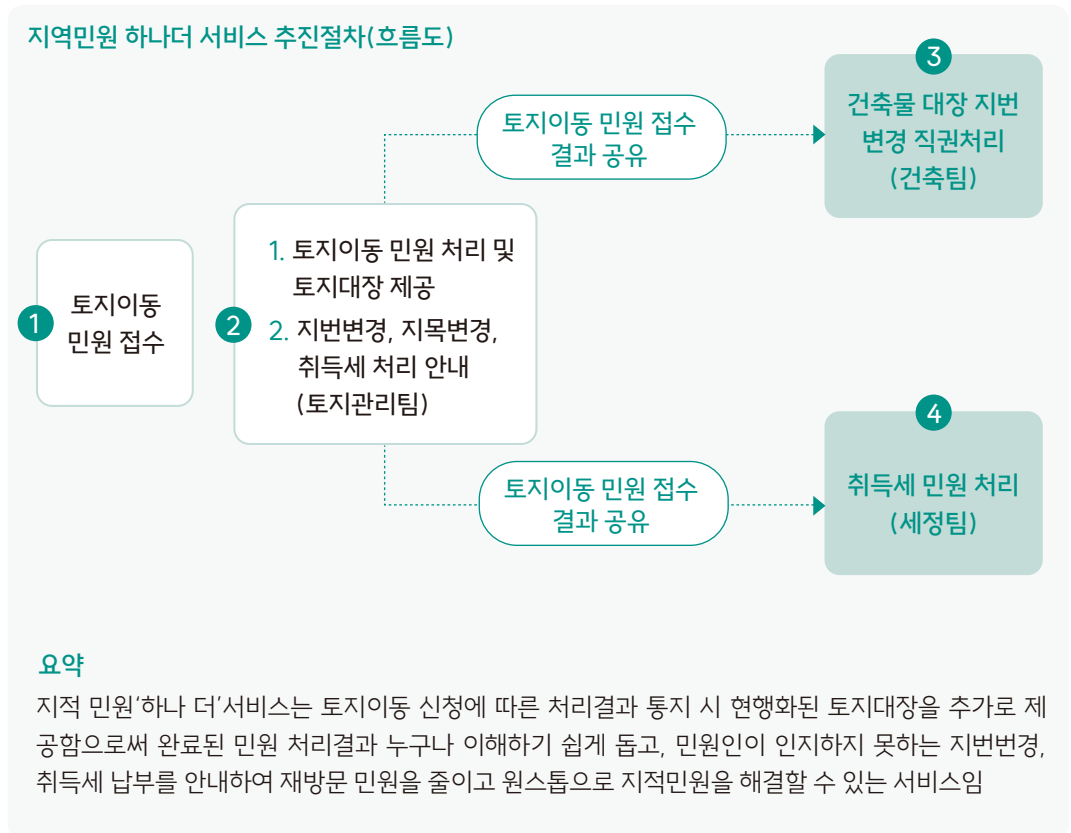
02 규제 개선과정

- ▶ 반복 민원관련 해결방안 모색 회의 : '22. 12월
- ▶ '지적민원 하나 더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23. 1월
- ▶ 군민중심 취득세 운영 계획 수립 : '23. 1월
- ▶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 추진 관련 중간점검 회의 개최 : '23. 6월

04 개선내용

- ▶ **(알권리 선제적 제공)** 단순 공문의 내용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토지이동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 무료로 발급 가능한 정부24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토지대장을 선제적으로 추가 제공하여 민원인이 변경된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원하였음
- ▶ **(원스톱 서비스 제공)** 토지이동 신청(분할, 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을 직권으로 정리하여 민원인의 방문 없이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결과를 통지하고 있음. ※ 건축팀 협업
- ▶ 또한 우편으로 처리결과를 발송할 때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토지이동(토지관리팀)관련 군청방문·접수시 건축물대장 지번변경(건축팀)이나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세정팀 협업

지역민원 하나더 서비스 추진절차(흐름도)



05 결과 및 개선효과

- ▶ '23. 1~6월간 416필지, 213명의 민원인에게 개선된 방식으로 처리결과를 안내하여 민원인의 재확인 전화민원을 현저히 감소시켜서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 및 담당자의 민원업무처리 시간을 단축시키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 ▶ 원스톱으로 개발행위 후 지적민원 관련 신고 등을 처리하여 군민의 재방문율을 현저히 낮추고, 연관공부(건축물대장)의 선제적 정비로 행정공부 관리현행화로 공신력 제고 및 군민 편의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참고자료(언론보도 및 홍보자료)



언론보도(강원일보)



언론보도(충청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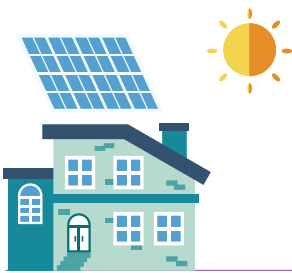
언론보도(국제뉴스)



양구군 홈페이지 홍보

13

태양광발전 규제해소를 통한 소득기반 마련



도 소관부서

양구군 도시교통과
이종수 주무관
033-480-7421

01 현황 및 문제점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양구군의 경우, 군민 중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에는 축사(우사, 퇴비사 모두)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조례개정 이후*('20년)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필지내 건축물 대장상 축사의 우사만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고 퇴비사로 구분된 경우는 설치가 안되게 되었습니다. (명시적 상위 법규 없음)

* 지역 경관 훼손 및 당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태양광발전 설치를 막기 위해 일부 대상을 규제하였음.

양구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

2.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 양구군의 경우 허가 가능한 대상은 공공청사,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 등만 허용하고 있으나 양구군을 제외한 17개 시·군(모두)에서는 우사처럼 특정 건물만 허용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 또한, 지난해 1월 초부터 2만 1,000원대에서 형성되던 한우 가격이 올해 1만 7,000원대까지 하락함. 6~7개월령 암송아지 가격은 1년 전 290만 원대에서 현재 180만 원대, 수송아지 가격은 390만 원대에서 280만 원대까지 하락하며 송아지값 하락폭은 더욱 심각하여 관내 축산업 종사자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 그 외에도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축산업에서는 우사로만 한정돼 있어, 돈사, 계사 등 기타 축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함을 느껴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02 규제 개선과정

- 양구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하고('23. 3월) 접수된 안건과 조례 개정 이후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

<참고내용 - 지역주민과 양구군의 각 의견>

주민의견 : 산업구조 유사지역 대비(철원, 화천, 인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규제 존재, 개선 필요

양구군 의견 :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민원, 주민간의 갈등, 무분별한 난개발 등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야 함.

- 양구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23. 4 ~ 5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개선과정 주요내용

기존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



<변경(안)> 규제개혁위원회 1차 결정('23. 4월)

- 건축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조문 변경(우사 ▶ 축사 및 축사의 부속시설로 변경)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한 경우 한정
- 상위법·군조례*에 근거한 축사와 축사의 부속시설 기준 마련
(태양광을 위해 무분별한 축사 건립 제한)
*(축사기준)「양구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 (축사 부속시설 기준)「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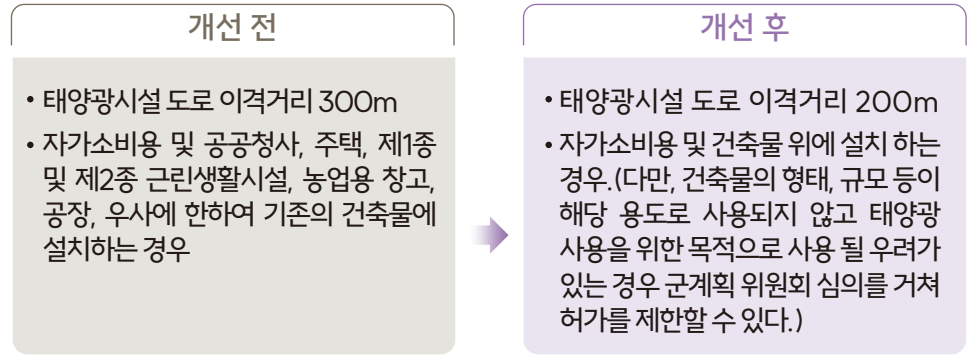


<변경(안)> 규제개혁위원회 2차 결정(최종)('23. 5월)

- 해당 용도에 맞게 설치하는 모든 건축물 허용(우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규제 완화)
- 태양광 사용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태양광을 위해 무분별한 건립 제한)
*소, 돼지, 닭 1마리 가져다 두고 축사, 우사 등만 크게 지어 태양광만 크게 올리려는 경우도 있음

03 개선내용

- 태양광 설치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음. 단,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한하여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방지함.



04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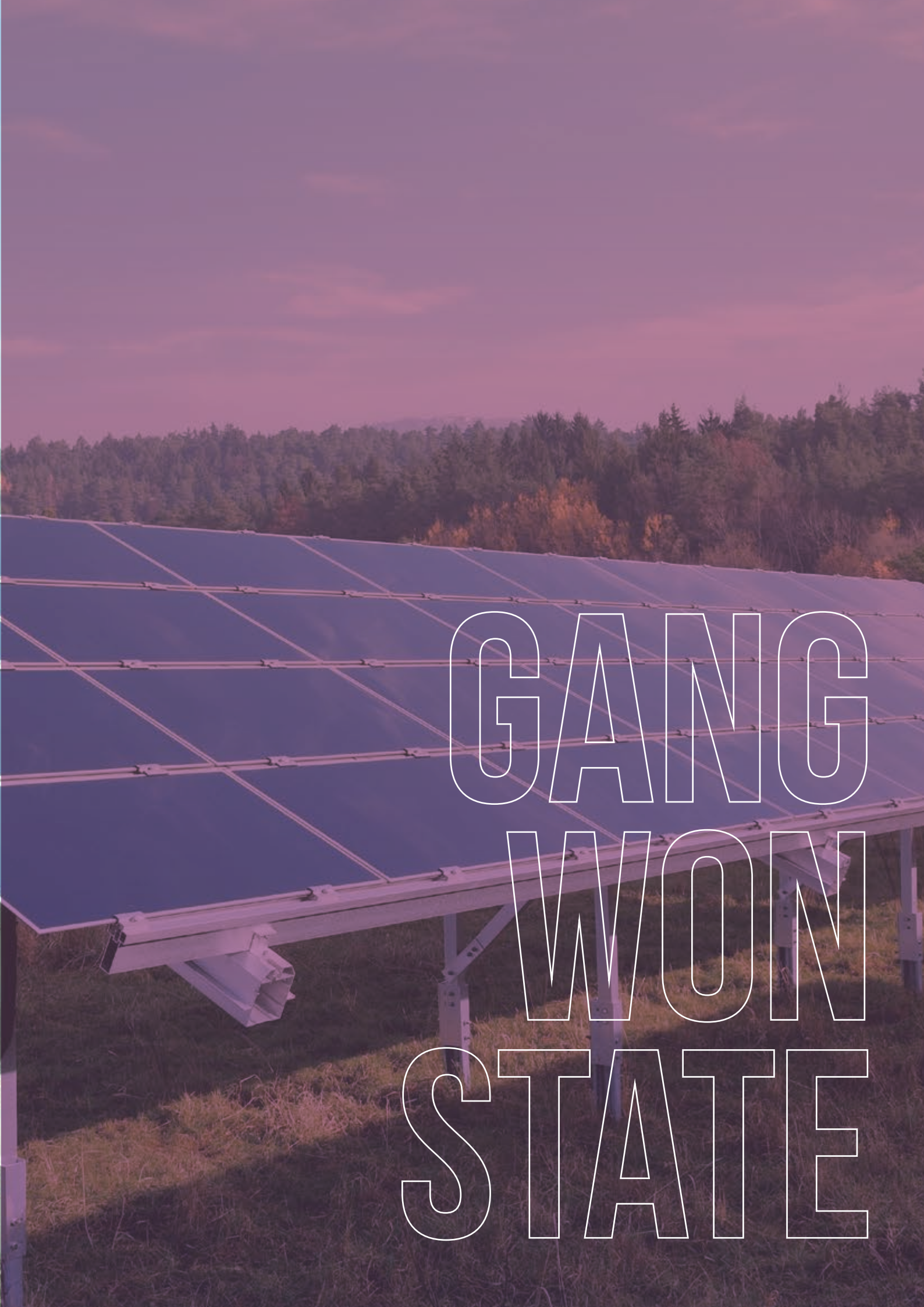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에서 건축물 위의 예외 조항에 우사가 한정됨을 개정함으로써 기타 축산업 종사자의 행정 법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도내 시군과 유사하게 운용하여 자치 법규의 보편성 확보하였습니다.
- 과도한 태양광의 설치 난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한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민원·주민갈등·난개발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및 공공청사, 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창고, 공장, 우사에 한하여 기존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20. 10.15.>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형태, 규모 등이 해당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태양광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참고자료(무분별한 설치/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우사를 설치하고 소 1마리만 두거나, 두지 않고 태양광만 올리는 사례





GANG WON STATE

참고·

규제혁신 건의창구 누리집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국무조정실)
www.sinmungo.go.kr

중소기업 ombudsman 누리집(중소벤처기업부)
www.osmb.go.kr

생활속 불편규제 건의함 누리집(강원특별자치도)
state.gwd.go.kr

01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이 만드는 규제혁신
규제개혁신문고

01

규제개혁
신문고란?

- ▶ 규제개혁신문고는 대한민국 국민·기업·지자체 등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국민참여형 규제건의 온라인 창구입니다

02

어떤 내용을
건의할수
있나요?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에 관해 건의할 수 있습니다.

03

건의방법

- ▶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www.sinmungo.go.kr)의 규제애로건의에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 ☎ 044-868-9206



규제개혁신문고

02

중소기업 ombudsman



01

중소기업
ombudsman
이란?

- ▶ 불합리한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관으로 규제발굴·개선, 애로사항 해소, 규제애로 조사·분석 및 개선사례 분석 등을 추진하는 독립기관입니다.

02

어떤 내용을
건의할수
있나요?

- ▶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규제상황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03

건의방법

- ▶ 중소기업ombudsman 누리집(www.osmb.go.kr)의 규제애로신고에서 건의할 수 있습니다.

☎ 044-204-7174



중소기업 ombudsman

03

생활속 불편규제 건의함

강원특별자치도

01

생활속 불편규제 건의함이란?

- ▶ 도민이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불편해하는 규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02

어떤 내용을 건의할수 있나요?

-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에 관해 건의할 수 있습니다.

03

건의방법

- ▶ 강원특별자치도청 누리집(state.gwd.go.kr) ▶ 행정정보 ▶ 규제혁신 ▶ 생활 속 불편규제 건의함에서 제안서를 다운받아 규제혁신과 담당자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現 kmk0621@korea.kr)

☎ 033-249-4747



생활속 불편규제 건의함



생활 속 불편 규제(민생규제) 개선 제안서

제안제목	(예시) 네일아트·메이크업 자격증 신설				
제안자	성명		지역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분야 (5분야 중 택)	①취업·일자리 애로	②복지 저해 규제	③일상생활 불편사항	④도민안전 강화	⑤생업여건 개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련법령	규제관련 법령, 제도 및 지침 명칭과 조항 기재 * 관련 법령을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예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소관부처	000부 0000과 * 관련 법령을 모르면 공란으로 남겨 두세요. (예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안하게 된 사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제안사항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일미용·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커트, 퍼머 등 일반미용사(헤어)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네일 미용 메이크업 영업이 가능함 ○ 미용사 일반 자격시험 내용이 네일 미용과 관련이 적어 네일 미용 종사자 자격증 취득이 불리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 추진방법 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으로 미용자격증을 분류하여 국가자격증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요청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 ○ 제안이 정책으로 반영될 시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네일 전문학원 창업시 헤어 미용학원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부담 해소 ○ 전문 네일 미용사들의 자격증 취득과 창업 활성화 기 				